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
발의자 : 민형배·주철현·김문수

이성윤·양부남·안도걸

김우영·정준호·최혁진
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‘재량’ 규정에서 ‘의무’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,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,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반면, 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이에,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.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, 기관이

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(안 제27조)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이 개정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보할 수 있다”를 “통보하여야 한다”로
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운영지침의 통보)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·출연 기관에	제27조(운영지침의 통보) -----
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,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	-----
장 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	-----
1. ~ 3. (생략)	-----

